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9-53 |
|----------|---------|

| | |
|-----|------|
| 제출자 |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법무부 권고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국가가 구축·운영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 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무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통일적으로 지원을 수행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추가
(안 제7조제2항제4호)

다.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10조제2항)

1)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라.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화함(안 제15조)

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되는 범죄피해 지원조항 삭제(현행 제17조·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5조·제33조·제34조

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37,8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1.~4. 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 제5조 앞의 “제2항 지역치안협의회”, 제15조 앞의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조 중 “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를 “민간단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약자"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안전보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 제4호) 중 “협의회의 의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제8조제2항 중 “의장은”을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 1회”를 “반기별 1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종전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종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1장 총칙</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범죄행위 피해자 및 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회적 약자</u>”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u>범죄행위</u>”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u>범죄예방 봉사활동</u>”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u>민간단체</u>”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p><u>제3조(군의 책무)</u>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p> | <p><u><삭 제></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u>민간단체</u>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u>사회적 약자</u>”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으로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p><u>제3조(군의 책무)</u>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과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u><삭 제></u></p> |

범죄행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치안협의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신설>

4.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삭제>

제5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기능)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 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4. (현행과 같음)
5.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거창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 의장
2.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3. 거창소방서장

4.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5.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신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 등

제15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4. (생략)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1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7조(범죄피해 지원)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피해(살인, 성범죄 피해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심의를 거쳐 500만원 이내의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에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면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18조(지원금의 지원 제외) 군수는 제17조에서 정한 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삭 제>

<삭 제>

| | |
|---|--------------------|
| <p>1. <u>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u></p> <p>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p> <p>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u>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p><삭 제></p> |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5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과 범죄예방 사업
2. 각종 폭력예방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전문상담 사업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2019년도 예산 5천만원 미만임

나. 2019년도 본예산 : 37.8백만원

- 1)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15백만원
- 2)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일반운영비) : 17.8백만원
- 3)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범죄피해자 지원) : 5백만원

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